

# 생명보험계약과 피보험이익의 재검토

## A Review on Issues of Insurable Interest and the Life Insurance

이 정 원\*

Jung-won Lee

생명보험계약에도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계약상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서 피보험이익에 대한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영국 법개정위원회는 영국법상 생명보험계약에도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제를 유지하되, 피보험이익의 인정 범위를 대폭 확장하고,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의 본질도 엄격한 의미의 법률적 개념의 금전적 손해의 발생 대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또는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될 합리적 예상 정도로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위 위원회는 피보험이익의 금전적 산정액의 한계를 폐지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생명보험계약과 관련한 피보험이익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첫째, 생명보험계약의 요건으로서 피보험이익을 요구하면서도 피보험이익에 관한 기존 법제 하의 엄격한 해석원칙을 완화하여 피보험이익의 존재범위를 확장하는 점과 둘째, 피보험이익에 관한 기존 법제의 과도한 규제와 제한을 보험계약 당사자의 자치와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으로 정책적 전환을 꾀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피보험이익, 특히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의 본질과 기능,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본질적으로 우리 법제상 유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면밀한 분석이 결여된 상태에서 생명보험계약에도 피보험이익을 도입하자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영국법상 피보험이익이라는 것이 그리 명확한 개념이 아니고, 그 운용상 효용도 과연 우리법제에 도입하여야 할 정도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를 가지게 한다. 따라서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을 도입하기 보다는 우리 법제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법제상 여하한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운용이라고 생각한다.

**국문 색인어:** 생명보험, 피보험이익, 보상계약, 도덕적 해이, 1774년 생명보험법, 도박계약법, 생명보험 전매제도

**한국연구재단 분류 연구분야 코드:** B130320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703hee@gmail.com)

논문 투고일: 2015. 04. 24, 논문 최종 수정일: 2015. 07. 02, 논문 게재 확정일: 2015. 08. 27

## I. 서론

상법 제668조는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보험계약의 목적”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인 피보험이익을 뜻한다고 본다<sup>1)</sup>. 우리나라의 통설적 견해는, 상법 제668조의 해석상 피보험이익이란 금전으로 산정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파악하므로, 객관적으로 그 가치를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개인적·정신적·감정적 이익 등은 피보험이익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sup>2)</sup>. 따라서 국내 통설적 견해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금전적 산정할 수 있는 손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sup>3)</sup>, 생명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인간의 생명가치를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sup>4)</sup>.

위와 같은 통설적 견해에 대해, 최근의 유력한 견해들은 생명보험계약의 경우에도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계약에 피보험이익을 인정함으로써 현행 법제 하에서 발생하는 생명보험계약과 관련한 다양한 부작용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는 그 동안 학계에서 자주 논의가 된 것이어서 이제는 진부하다는 느낌도 받지만, 그래도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고, 최근 영국 법개정위원회(The Law Commission)<sup>5)</sup>의 피보험이익의 개혁 관련 보고서<sup>6)</sup>의 제출로

1) 채이식, 상법강의(하), 개정판, 박영사, 2003, p. 526; 편집대표 정동윤·손주찬, 주석상법(VII), 제1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p. 242.

2) 채이식, 위의 책, pp. 527-528; 편집대표 정동윤·손주찬, 위의 책, p. 249; 박세민, 보험법, 제2판, 박영사, 2013, p. 372.

3) 소위 ‘절대설’의 입장. 절대설은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계약의 절대적 요건으로서 그 흠결은 보험계약을 무효화한다고 본다(편집대표 정동윤·손주찬, 위의 책, pp. 247-248;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4, p. 196). 이에 반해 소위 ‘상대설’은 피보험이익이란 보험계약의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보험이익이 흠결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4) 채이식, 앞의 책, p. 526; 편집대표 정동윤·손주찬, 위의 책, p. 245; 정찬형, “미국법상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보험법연구 3, 보험법연구회, 삼지원, 1999, p. 410. 그러나 채이식 교수는 위의 책에서, 인보험에 피보험이익이라는 개념을 전혀 도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5) 영국 법개정위원회는 영국 현행 법률의 검토 및 필요시 개정권고 등을 수행하기 위해 1965년 법개정위원회법(The Law Commissions Committee Act 1965)에 의해 설립된 독립

인해 오히려 갈수록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간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피보험이익의 개념과 인정범위에 관한 일반론적 고찰과 함께 생명보험계약에도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는 최근의 유력한 견해들의 논거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생명보험계약에도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의 법리적 분석과 함께 피보험이익을 생명보험계약에 도입하는 경우 예상되는 법정책적 효용에 대해 영국의 법제와 우리나라 현행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위주로 살펴본다.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은 피보험이익에 관한 우리 법의 해석 및 적용의 입법론적 좌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의 인정문제와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검토된 바 있는 생명보험전매제도이므로, 본고에서는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 인정문제와 관련되는 한도에서 생명보험전매제도의 의의와 도입가능성에 대해 약간의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 II. 피보험이익의 의의와 생명보험계약에의 적용가능성

### 1. 생명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이익의 의의

피보험이익의 개념 내지 본질에 관한 국내의 견해는 피보험이익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를 입게 되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과의 관계(소위 ‘관계설’의 입장)”라고 정의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동안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익 또는 가치(‘이익설’의 입장)”<sup>7)</sup>, 또는 “보험사고로

위원회로서, 공평성(fair), 효율성(cost-effective), 현대성(modern), 그리고 단순성(simple)을 법률 제·개정 작업의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 법개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lawcommission.justice.gov.uk/>) 참조.

6) UK Law Commission, Issues Paper 4 (Insurable Interest), 2008. 및 Reforming Insurance Contract Law Issues Paper 10 Insurable interest: updated proposals, March 2015.

7) 피보험이익을 피보험자와 보험목적 간의 관계나 이익의 존재 여부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러한 견해들 외에도 피보험이익에 관해서는 관여설, 재산재설 등 다양한 견해들이

인하여 피보험자로부터 탈취될 우려가 있는 개별적 경제가치”라고 파악하거나<sup>8)</sup>, 굳이 피보험이익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는 것 보다는 피보험이익의 요건을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sup>9)</sup>. 또한 피보험이익에 관한 관계설과 이익설의 논의는 피보험이익의 본질에 관한 적절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sup>10)</sup>.

피보험이익의 개념 내지 본질에 관한 국내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견해가 앞서 살펴 본 관계설과 이익설의 관점에서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논하면서도, 정작 피보험이익의 개념이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경제적 관계 내지 이익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sup>11)</sup>.

한편 생명보험계약의 경우에도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는 유력한 견해에 따르면, 생명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이익이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중요한 관계를 의미한다”거나<sup>12)</sup>,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사고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가 가지는 이해관계”<sup>13)</sup>, 또는 “부보가능한 사실상의 지위”<sup>14)</sup> 정도로 파악하는 것 같다<sup>15)</sup>.

---

제시되고 있다. 피보험이익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 관해서는, 이용석, “피보험이익의 본질에 관한 비판적 검토”, 손해사정연구, 제2권 제2호, 한국손해사정학회, 2009. 8, p. 137 이하 참조.

8) 김인제, “피보험이익의 개념에 관한 비판적 고찰”, 보험학회지, 제20권, 한국보험학회, 1982, p. 43.

9) 편집대표 정동윤·손주찬, 앞의 책, pp. 242-243.

10) 채이식, 앞의 책, pp. 526-527.

11) 특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생명보험계약의 경우에도 피보험이익을 인정하는 견해들도, 상법상 피보험이익을 물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그 목적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보면서도, 물건보험 외의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어느 특정인이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거나(양승규, 앞의 책, p. 195), 일정한 보험목적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이지만 이익설과 관계설 사이에 현격한 개념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박세민, 앞의 책, pp. 367-368).

12) 박세민, 앞의 책, pp. 371-372.

13) 양승규, 앞의 책, p. 440.

14) 김성문,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경영법률, 제16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6, p. 559.; 고택근, “피보험이익의 개념확장”, 상사법연구, 제16권 제2호, 상사법학회, 1997, p. 532.

15) 다만 생명보험계약에도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들 중에서도 일부 견해는

생각건대,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의 개념 내지 본질을 일의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영국 법개정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험의 종류 및 해당 보험을 규율하고 있는 각 실정법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sup>16)</sup>.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이익의 개념에 관한 국내 통설적 견해의 설명만으로는 피보험이익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일의적으로 파악하기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상법 제668조 등의 규정 및 손해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이익의 일정한 기능<sup>17)</sup>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손해보험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피보험이익을 요구하는 통설적 견해에 대해서는 그 논리적 타당성에 수궁이 간다<sup>18)</sup>. 그러나 입법론적 논의를 넘어 우리 상법의 해석론으로도 생명보험과 같은 인보험계약에 피보험이익을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일부 견해<sup>19)</sup>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첫째, 생명보험계약에도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들이 제시하는 피보험이익의 개념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과연 생명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이익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생명보험계약에도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도입하자는 국내의 대표적 견해들은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중요한 관계”, 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사고로 불

---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의 본질에 대해 명확한 개념규정을 하지 않고, 단지 혈연관계 등 피보험자와 일정한 사회적 관련성을 가지는 자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인정함으로써 보험계약의 본질 내지 존재의의를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김철호,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연구”, 기업법연구, 제24권 제3호, 기업법학회, pp. 250-252), 이는 정작 생명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이익의 본질 내지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없이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이를 인정함으로써 생명보험과 관련한 법정정책적 효용을 달성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자는 주장으로서, 사건으로는 논리적 전개과정이 전도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6) UK Law Commission, Issues Paper 4 (Insurable Interest), 2008, para. 1.11.

17) 통설적 견해는 손해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이익의 효용을 ① 도덕적 위험의 방지와 보험자의 보상책임범위의 확정, ② 손해보험계약에서의 실손보상원칙의 확립, ③ 보험계약의 동일성 판단 등을 들고 있다. 편집대표 정동윤·손주찬, 앞의 책, pp. 250-251; 박세민, 앞의 책, pp. 375-376 참조.

18) 영국 법개정위원회는 일반적인 보상보험계약(Indemnity insurance)에 있어서도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해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상세한 논의는, UK Law Commission, Issues Paper 10, PART 2, 이하 참조.

19) 양승규, 앞의 책, pp. 439-440; 박세민, 위의 책, pp. 371-372.

이익을 받게 되는 자가 가지는 이해관계”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중요한 관계”라는 것이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중요한 관계”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불확정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피보험이익의 개념 내지 본질에 대한 법리적 파악으로 한계가 있다. 또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사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가 가지는 이해관계라는 것 역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sup>20)</sup>.

둘째, 상법은 피보험이익을 손해보험의 통칙에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인보험의 통칙규정에는 피보험이익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동 법 제668조를 준용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법의 태도는 손해보험과 달리 인보험에는 피보험이익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법적 결단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생명보험계약에도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일부 견해는 상법의 해석론을 뛰어 넘는 것이다.

셋째, 손해보험계약은 소위 ‘손해보상계약(a contract of indemnity)’, 또는 ‘보상보험계약(indemnity insurance)’으로서, 당사자가 약정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재산상 손해만이 보험보상의 대상이다<sup>21)</sup>.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손해보험계약은 이득금지의 원칙을 그 존립의 근거로 하는데, 손해보험계약의 이러한 이득금지원칙을 관철하는 기준이 곧 피보험이익이다<sup>22)</sup>. 그러나 생명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보험계약으로서(상법 제730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구체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약정 보험금액을 지급한다는 定額保險이라는 점에서 손해보험계약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sup>23)</sup>. 즉,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20) 이 점에 관해서는 UK Law Commission, Issues Paper 4, para. 1.11- 12.에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21) 김성태, 보험법강의, 법문사, 2001, p. 364.

22) 위의 책, p.364.

23) 위의 책, p. 814; 편집대표 정동윤·손주찬, 앞의 책, p. 724; 양승규, 앞의 책, p. 443; 박세민, 앞의 책, p. 800.

의 개별적 합의에 의해 자유롭게 정해질 뿐, 상법상 보험금액의 약정에 관한 제한은 없다. 단지 보험실무상 도덕적 위험의 방지 차원에서 보험금액의 최고한도를 보험자들이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sup>24)</sup>.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금액 설정에 관해 생명보험계약에도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는, 보험계약의 목적이란 보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목적물에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손해를 보상 받으려는 의도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생명보험의 경우는 보험의 목적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망, 생존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지출 또는 기대이익의 상실 등의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보험계약의 목적이며 이 경우 피보험이익이란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장례비용의 지출 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등이 피보험이익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sup>25)</sup>. 이러한 설명은 생명보험계약의 목적을 보험수익자 등의 장래의 금전적 수요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란 점에서 일견 경청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명보험계약에 피보험이익을 인정하는 국내의 다수 견해들은 일반적으로 후술하는 영미법계 생명보험계약에서와 같이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관계는 부부관계·혈연관계·근로관계·채권채무관계 등과 같이 다양할 뿐 아니라, 보험수익자 등이 피보험자의 생명에 대해 가지는 가치의 인정여부도 위에서 설명한 다양한 관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sup>26)</sup>, 위의 설명은 생명보험계약 전반에 걸친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sup>27)</sup>.

무엇보다도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위의 설명은 생명보험계약 체결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생명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24) 편집대표 정동윤·손주찬, 앞의 책, p. 730.

25) 김성문, 앞의 논문, p. 545.

26) 편집대표 정동윤·손주찬, 앞의 책, p. 246.

27)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법률상 또는 형평상의 권리의 상실 위험 등을 증명하여야 하고, 피보험자의 생존에 근거한 단순한 장래의 금전적 이익 또는 기대이익의 기대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Nicholas Legh-Johns·John Birds·David Owen ed, MacGillivray on Insurance Law, 10th Ed., Sweet and Maxwell, London, 2003, pp. 37-38.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과연 장래 사망 등으로 인한 기대이익의 상실 등을 정확히 산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위 주장과 같이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사이에 일정한 관계만 있으면 피보험이익을 인정하는 경우, 중복보험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채권채무 관계를 이유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무자의 생명을 건 도박계약과 별반 차이가 없다. 생명보험계약에 피보험이익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가 내세우는 주된 논거 중 하나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보험이익을 인정함으로써 생명보험에서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사이에 일정한 관계만 있으면 중복적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여지가 여전하다는 점에서는 생명보험계약에서의 도덕적 위험의 제거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의 개념 내지 본질에 대한 확정적 분석은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에 대한 개념과 마찬가지로 일의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의 인정 여부는 입법론적 관점에서 피보험이익을 인정함으로써 우리 현행 법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법정책론적 고려가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 2. 생명보험계약과 피보험이익의 효용에 대한 검토

### 가. 문제의 제기

원래 피보험이익은 인위적 보험사고 초래의 방지 및 보험의 도박화 방지(the prevention of moral hazard and gambling in the guise of insurance)에 있었다<sup>28)</sup>. 피보험이익의 효용에 관한 이러한 설명은 대체적으로 국내에서 생명보험계약에도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들의 주된 논거이기도 하다. 생명보험계약에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들에 따르면, 생명보험계약에 피보험이익

28) 양승규, 앞의 책, pp. 199-200.

을 인정함으로써 타인의 생사를 대상으로 한 도박계약을 방지할 수 있고, 생명보험금을 노린 피보험자 살해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sup>29)</sup>.

그렇다면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 도입론의 견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행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가 법률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피보험이익을 인정함으로써 과연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제거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명보험계약에 피보험이익을 요구하는 대표적 입법례인 영국법의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하에서는 다소 진부한 감이 없지 않지만 영국의 피보험이익에 대한 입법적 연혁과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의 본질 및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다.

#### 나. 영국의 피보험이익의 입법적 연혁<sup>30)</sup>

영국에서는 18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저명 인사나 먼 친척 또는 지인의 생사를 대상으로 한 도박계약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다. 특히 스코틀랜드와 달리<sup>31)</sup> 영국의 경우에는 보통법상 타인의 생명보험이라 할지라도 피보험이익을 계약의 유효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은 도박계약도 집행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 현상의 방지 및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계약의 방지를 위해 제정된 것이 「1774년 생명보험법(The Life Assurance Act 1774)」이다. 1774년 생명보험법 제1조는 피보험이익이 없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면서, 피보험이익이 결여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sup>32)</sup>.

29) 박세민, 앞의 책, pp. 371-372; 김철호, 앞의 논문, p. 250; 김성문, 앞의 논문, pp. 557-558.

30) 이 부분은 UK Law Commission, Issues Paper pp. 4-5 이하 PART 2, A LEGISLATIVE HISTORY OF INSURABLE INTEREST를 주로 참고하였음을 밝혀 둔다.

31) The Laws of Scotland (Stair Memorial Encyclopaedia) Vol 12, para 848, citing Bell's Principles s 457.

32) Life Assurance Act 1774.

[1] No Insurance to be made on the lives of persons having no interest, &c.

From and after the passing of this Act no insurance shall be made by any person or persons, bodies politick or corporate, on the life or lives of any person, or persons, or on any other event or events whatsoever, wherein the person or persons for whose use, benefit, or on whose account such policy or policies shall be made, shall have no

한편 1774년 생명보험법상 피보험이익이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임에도 불구하고 동 법은 피보험이익의 개념이나 본질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영국법상 피보험이익의 본질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1806년 *Lucena v. Craufurd* 사건<sup>33)</sup>에서 Eldon 판사가 보상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이익을 “당사자의 소유나 향유에 영향을 주는 우연한 사건에 의하여 소멸될 수도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 또는 그 재산에 관한 특정한 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A right in the property, or a right derivable out of some contract about the property, which in either case may be lost upon some contingency affecting the possession or enjoyment of the party.)”라고 판시함으로써 시작된다<sup>34)</sup>. 이후 「1845년 도박계약법(The Gambling Act 1845)」 제 18조는 모든 도박계약을 무효로 하고, 도박계약의 집행을 거절함으로써 인해<sup>35)</sup>,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도박계약으로 간주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sup>36)</sup>.

2007. 9.부터 발효된 「2005년 도박계약법(The Gambling Act 2005)」은 1845년 도박계약법 제18조를 삭제하고, 도박계약이라고 해서 당연히 집행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규정하였다<sup>37)</sup>. 이에 따라 영국의 경우, 적어도 계약의 집행을 측면에서는

---

interest, or by way of gaming or wagering; and every assurance made contrary to the true intent and meaning hereof shall be null and void to all intents and purposes whatsoever.  
한편 동 법 제4조는 그 적용범위를 승선한 자·동산·상품을 제외한 모든 보험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4] Not to extend to insurances on ships, goods, &c.

Provided always, that nothing herein contained shall extend or be construed to extend to insurances bona fide made by any person or persons on ships, goods, or merchandises, but every such insurance shall be as valid and effectual in the law as if this Act had not been made.

33) *Lucena v Craufurd*, 1806, 2 Bos & PNR 269.

34) *Ibid.*, at 321.

35) Gambling Act 1845  
Section 18

All contracts or agreements, whether by parole or in writing, by way of gaming or wagering, shall be null and void; and no suit shall be brought or maintained in any court of law or equity for recovering any sum of money or valuable thing alleged to be won upon any wager.

36) UK Law Commission, Issues Paper 4, para. 2.12 참조.

37) Gambling Act 2005, Section 335.

해상보험계약을 제외한 비보상보험계약(Non-indemnity insurance)에는 반드시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sup>38)</sup>. 이와 관련해서 2005년 도박계약법의 시행에 따라 영국법상 피보험이익의 증명이 불필요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으나<sup>39)</sup>, 2005년 도박계약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1774년 생명보험법은 여전히 명시적으로 생명보험계약에의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과 후술하는 바와 같이 영국판례는 생명보험계약에도 원칙적으로 피보험이익의 존재사실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국법상 피보험이익은 생명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영국법상 생명보험계약과 피보험이익의 현황

### (1)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의 발생근거

1774년 생명보험법은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계약체결 당시에 피보험이익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동 법은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의 개념이나 본질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영국 판례를 분석해 볼 때, 영국법상 생명보험계약에서 요구되는 피보험이익의 종류는 대략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sup>40)</sup>.

- ①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와 혈연관계 등의 ‘자연적 애착관계(natural affection)’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 ③ 피보험이익이 실정법규에 의해 창설된 경우,
- ④ 위 세 가지 범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부류의 사람

38) UK Law Commission, Issues Paper 4, para. 2.18 참조.

39) R. Merkin, “Insurable interest, the repeal of the prohibition on gambling”, *Insurance Law Monthly*, December 2005, pp. 4-5.

40) UK Law Commission, Issues Paper 4, para. 3.69-3.70 참조.

들의 생사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법원에 의해 인정된 경우 등이다.

### (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자연적 애착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위 ①의 경우, 영국 판례는 자기 자신의 생명보험계약이나 배우자 간의 생명보험계약에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이익이 추정된다고 보지만, 그 외에 나머지 가족관계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이익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 간의 생명보험계약을 제외한 가족관계나 친족관계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이익의 존재에 대해 엄격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원칙적으로 영국법상 부모와 자녀 상호 간에 일반적 부양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부모는 자녀의 생존에 대한 일정한 금전적 이해관계를 증명하지 않는 한 자녀의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며, 자녀 또한 부모의 생존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지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법리는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와 같은 가족구성원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sup>41)</sup>. 한편 자연적 애착관계에 의해 피보험이익의 증명책임을 요구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금액의 제한은 없으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이익에 상관없이 자신의 보험료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액을 약정할 수 있다.

### (3) 나머지 사안들의 경우

위 ①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들의 경우, 피보험이익의 존재가 보험계약의 필수요건으로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험금액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생명에 대해 가지는 금전적 가치를 상회하지 못한다<sup>42)</sup>.

41) *Halford v. Kymer*, 1830, 10 B. & C. 724; *Att-Gen. v. Murray*, 1903, 2K.B.64; *Harse v. Pearl Life*, 1903, 2 K.B. 92.

42) UK Law Commission, Issues Paper 4, para. 3.7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관계에 있어 고용주는 생명보험계약 체결당시 피고용인이 장래 제공할 노무의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피보험이익을 가지며<sup>43)</sup>, 피고용인도 고용주의 생존에 의해 자신이 장래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전적 가치 상당의 피보험이익을 가진다고 본다<sup>44)</sup>.

채권관계의 경우, 채무자의 사망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의해 자신의 채권추심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생존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진다고 본다<sup>45)</sup>. 이 때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의한 채권의 변제의 충분함 등의 사실은 피보험이익의 존재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sup>46)</sup>.

또한 동업관계(Partners)의 경우에도, 동업자의 사망에 의해 남은 동업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생존 동업자의 동업관계에 기한 지분상실 등의 우려가 있는 한도에서 동업자 상호 간에는 타방의 생존에 대해 일방 동업자는 피보험이익을 가진다고 본다<sup>47)</sup>.

### 3. 국내의 생명보험계약에의 피보험이익 도입론의 주요 논거와 비판적 검토

#### 가. 도입론의 주요 논거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생명보험계약에도 피보험이익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견해들의 주된 논거는 대부분 상법 제731조의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규정한 동의주의의 단점을 피보험이익을 도입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 같다<sup>48)</sup>. 이에 따르면 우리 상법 제731조가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상 동의주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sup>49)</sup>.

43) *Simcock v. Scottish Imperial Insurance Co.*, 1902, 10 S.L.T. 286,288; *Turnbull v. Scottish Provident Institution*, 1896, 34 S.L.R. 146.

44) *Hebdon v. West*, 1863, 3 B. & S. 579.

45) *Anderson v. Edie*, 1795, 2 Park, Mar. Ins. (8th ed., 1842); *Von Lindenau v. Desborough*, 1828, 3 C. & P. 353; *Hebdon v. West*, 1863, 3 B. & S. 579.

46) Nicholas Legh-Johns · John Birds · David Owen *ed. op. cit.*, p. 41.

47) *Griffiths v. Fleming*, 1909, 1 K.B. 805, 815.

48) 박세민, 앞의 책, p. 372; 김철호, 앞의 논문, p. 255.

첫째, 동의주의는 도박보험계약의 방지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나, 피보험자의 살해위험 등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둘째, 동의주의의 형해화의 문제점, 즉 가장이 그 권위를 이용하여 그의 필요에 따라 피보험자인 가족구성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동의의 진정성·동의내용·동의에 대한 행위능력의 유무 등 동의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 나. 비판적 검토

### (1) 생명보험계약과 도덕적 위험의 상관관계

생명보험계약에 피보험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피보험자 살해 등의 도덕적 위험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은 현재 생명보험계약에 피보험이익을 요구하는 입법례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어느 정도 그 해답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동의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금을 노린 가족구성원 간의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sup>49)</sup>.

그렇다면 생명보험계약에 피보험이익을 필요로 하는 영국의 경우는 어떨까?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법상 배우자 간에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별도로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생명을 보험에 부치는 경우나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나 그 역의 경우, 동업자 간의 경우 등에는 엄격하게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영국 법개정위원회의 위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1774년 생명보험법은 타인의

49) 우리 상법 제731조의 법적 문제점들에 대한 설명은, 김선정,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49집, 1997, p. 305 이하를 참조하였다.

50) 우리나라 보험범죄 발생현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보험범죄형사판례집, 금융감독원, 2014, 참조.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계약뿐 아니라 피보험자 살해 등의 도덕적 위험의 감소에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한다<sup>51)</sup>. 또한 영국법상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만 존재하면 되므로<sup>52)</sup>, 배우자 간이라 하더라도 이혼 후에는 오히려 보험금을 노린 피보험자 살해 등의 위험이 현저히 상승한다는 부작용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엄격한 피보험이익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 ‘채권자-채무자 관계’나 ‘고용인-피고용인 관계’, ‘동업자 관계’ 등의 경우에도 피보험이익에 포함될 채권액의 확정문제나 고용인이나 피고용인 등이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정확한 금전적 산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더 큰 문제점은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 체결시에만 요구되므로, 채무자의 완전변제 이후에도 채권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거나, 피고용인의 퇴사 후에도 계속해서 고용인이 피고용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소지도 있고, 보험금을 노린 피보험자 살해 등의 위험은 더욱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누군가 자신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sup>53)</sup>.

51) UK Law Commission, Issues Paper 4, para. 4. 14 이하 참조.

52) *Dalby v. India & London Life Assurance Co.*, 1854, 15 CB 365.

53)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법 제735조의3이 단체보험계약에는 상법 제731조가 규정하는 동의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개별적 서면동의를 단체규약에 의한 집단적 동의로 갈음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9. 9. 16. 선고 98헌가6 결정에서 “상법 제73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는 개별보험의 일반원칙에서 벗어나 규약으로써 동의에 갈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체보험의 특성에 따른 운용상의 편의를 부여해 주어 단체보험의 활성화를 돕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체구성원들의 복리 증진 등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있고, 단체보험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 동의를 집단적 동의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 방법은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 (2) 가족구성원 간 동의제도의 형해화 등의 문제

생명보험계약에도 피보험이익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는, 가장이 그의 권위를 앞세워 가족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근대적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기초로 한 호주제도가 폐지된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고, 우리나라는 전통적 가족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 중 하나라는 점은 별도의 통계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이에 따라 가정 내 부부상호 간의 역학관계 내지 부모와 자녀 관계도 과거의 유교적 가치질서에 기초를 둔 가족 질서에서 가족구성원 상호 간의 인권과 가치관의 존중을 우선시하는 가족질서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특히 배우자 간 외의 가족관계의 경우, 영국법상으로는 피보험이익의 존재사실의 증거가 요구되지만<sup>54)</sup>, 우리 상법 제732조에 따르면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위의 자들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즉 우리 상법은 동의제도가 문제될 소지가 있는 일정 범주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동의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애당초 이러한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명보험계약에서 가족구성원 간 동의제도의 형해화가 우려되는 경우는 부모와 만15세 이상의 자녀와의 관계나 형제자매 등의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인데, 이미 언급한 것처럼 과연 성년에 가까운 연령대의 자녀나 성년의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 등의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생명보험계약의 동의를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 (3) 채권관계 및 고용관계와 피보험이익

前述한 바와 같이 영국판례에 따르면, 대여금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관계 내지

54) Andrew McGee, *Life Assurance Contracts*, Routledge · Cavendish, New York, 2006, p. 20.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의 고용계약 내지 근로계약관계 등의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생존에 대해<sup>55)</sup>, 고용인은 피고용인의 생존에 대해<sup>56)</sup>, 그리고 역으로 피고용인도 고용인의 생존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sup>57)</sup>. 또한 영국 판례는 동업계약(Partnership)에 있어 동업자들은 상호 간에 상대방의 생존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가진다고 본다<sup>58)</sup>.

그러나 영국 판례가, 피보험이익의 인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대여금 채권자 등의 금전적 손해발생의 방지나 고용주나 피고용인이 상대방에 대해 가지는 금전적 이해관계의 보호 등은 우리 상법상 각종 보험제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공적보험제도의 활용을 통해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생명보험계약에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정책적 필요성 내지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볼 것이다<sup>59)</sup>.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변제로 인한 금전적 이익의 보장을 위해서는 굳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생존에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끌어 올 필요 없이,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채무자가 체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sup>60)</sup>. 또한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생존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나 동업자 간의 상호 생존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는 우리 상법상 단체보험계약을 통해 어느 정도 보장이 가능

55) *Anderson v. Edie*, 1795, 2 Park, Mar. Ins. (8th ed., 1842); *Hebdon v. West*, 1863, 3 B. & S. 579; *Macaura v. Northern Ass. Co.*, 1925, A.C. 619, 626. 이에 반해 채무자는 채권자의 생존에 관해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판례는 *Hebdon v. West*, 1863, 3 B. & S. 579 참고.

56) *Hebdon v. West*, 1863, 3 B. & S. 579.

57) *Simcock v. Scottish Imperial Insurance Co.*, 1902, 10 S.L.T. 286, 288; *Turnbull v. Scottish Provident Institution*, 1896, 34 S.L.R. 146.

58) *Griffiths v. Fleming*, 1909, 1 K.B. 805, 815.

59) 같은 취지, 김성태, 앞의 책,

60) 보증보험계약(Contract of fidelity insurance)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법령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상법 제726조의 5), 채권자에게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므로 담보적 기능을 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담보의 보증금을 납입해야 하는 부담이 없으므로 신용보완적 기능을 한다. 강위두·임재호, 상법강의(하), 전정판, 형설출판사, 2010, p. 774.

할 것으로 본다<sup>61)</sup>. 특히 우리 판례는 단체보험에서 사업자가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보험수익자가 되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도 가능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sup>62)</sup>, 고용주나 동업자 중 한 명이 피고용인이나 타방 동업자를 피보험자로 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여지가 있다<sup>63)</sup>.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보상 및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위 법률들은 원칙적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sup>64)</sup><sup>65)</sup>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

(61) 단체보험이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괄적으로 피보험자로 하여 그들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말한다(상법 제735조의3).

(62) 대법원 1999. 05. 25. 선고 98다59613 판결.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단체보험이라고 하여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동지,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63) 다만 2014. 3. 11. 상법 개정으로 인해 제735조의3 제3항이 신설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6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사서비스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다.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그 적용대상이므로 피고용인이 고용주의 생존에 대해 가지는 실업, 재해보상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4. 소결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시되고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의 피보험이익 도입론의 근거와 효용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사건으로는 우리 법제 하에서 생명보험계약에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보험이익 도입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국에서 생명보험계약에 피보험이익을 인정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 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6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별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상 단체보험과 보증보험 및 각종 공적보험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일정 부분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공적보험 내지 사적보험제도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등의 보호에 일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피보험이익 도입론의 주된 비판의 대상인 상법 731조가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경우도, 만 15세 미만자 등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으로 인해 이러한 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 있고, 최근의 상법 개정으로 단체보험계약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동의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항들을 감안할 때, 우리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피보험이익을 도입할 실익은 사실상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보험이익을 생명보험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엄격히 요구하는 영국의 경우 피보험이익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점으로 인해 입법적 개혁 요구에 직면해 있다. 또한 생명보험계약에 피보험이익을 엄격히 요구하는 경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생명보험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생명보험계약에의 피보험이익의 도입은 신중히 판단할 문제이다.

### III. 피보험이익과 생명보험금청구권 전매제도

#### 1. 생명보험금청구권 전매제도의 의의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사망이 임박한 보험계약자가 장래의 생명보험금 지급청구권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일정한 금원을 취득하는 “viatical settlement”가 생명보험계약자의 금전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sup>66)</sup>. 이는 주로 경제적 곤란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할 여유가 없는

66) 미국 보험실무에서의 용례를 살펴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viatical settlement란 잔존수명이 2년 미만인 자로부터 생명보험금청구권을 매수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반해 고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이들이 생명보험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보험금청구권을 보험계약자의 기대여명에 따라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하는 제도로서, 미국의 경우 생명보험금청구권의 양도가능성을 인정한 연방대법원 판결<sup>67)</sup> 이후 널리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법상 viatical settlement를 “생명보험전매제도”라고 지칭하면서<sup>68)</sup>, 위 제도의 도입에 의해 보험계약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시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sup>69)</sup>.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노령인구의 증가 속도 및 노령인구의 빈곤율은 OECD국가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향후 노령인구의 빈곤은 우리사회 전체의 큰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정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장래 보험 수익자가 지급받을 생명보험금청구권을 생전에 현금화할 경우, 노령인구 및 난치병 환자의 치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가경제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보험전매제도가 전술한 바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보험수익자가 장래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청구권을 보험수익

령자로부터 생명보험금청구권을 매수하는 행위는 life settlement라고 하여 구분한다고 한다. 김이수, “우리 법상 생명보험 매매의 필요성 및 양도방식의 적절성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p. 604 각주) 2 재인용.

67) *Grigsby v. Russell* 222 U.S. 149, 1911.

68) 국내에서는 미국법상 viatical settlement를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전매제도”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이러한 생명보험전매제도는 우리법상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동시에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보험계약상 지위의 포괄적 이전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계약인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보험계약자가 단지 보험수익자의 지위만을 이전하는 것은 장래채권의 일종인 생명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채권양도계약이라고 볼 것이다. 국내에서 생명보험전매제도라는 명칭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의 양도를 논하는 견해들은 일반적으로 위 두 가지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생명보험의 매매”라고 지칭하면서 그 법적 효력을 논하는 것 같다(김이수, 앞의 논문, p. 604 이하 및 김철호, 앞의 논문, pp. 262-263 참조). 필자는 위 두 가지 형태의 계약은 그 법적 성질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달리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 본고의 논의범주는 생명보험계약과 피보험이익의 관점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위 논점에 대해서는 차후의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69) 김철호, 앞의 논문, p. 262 이하 및 김이수, 앞의 논문, p. 610 이하 등 참조. 참고로 2009. 12.경 민주당 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에 의해 생명보험전매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한 보험업법 및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다.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박탈한다는 점과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을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파악하는 경우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가 하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 2. 생명보험금청구권의 양도성

우리 민법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능하고,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양도성이 제한된다(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은 채권성립의 전부 또는 일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아직 채권으로 성립되지는 않았지만, 장래에 채권성립의 조건이 달성될 가능성이 있는 장래채권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sup>70)</sup>. 따라서 통설적 견해와 판례는 우리 민법의 해석상 장래채권의 양도성을 인정하고 있다<sup>71)</sup>.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의 제한에 관해 민법 제449조는 ①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과 ②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으로 나누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으로는 (i)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 (ii) 채권자가 변경되면 권리행사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 경우, (iii) 특수한 채권자와의 사이에서만 채권의 결제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은 그 적용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채권의 재산권적 성격을 감안할 때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은 좁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sup>72)</sup>.

한편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생명보험계약과 피보험이익의 관계를 보험금청구권 양도의 관점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미국에서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sup>73)</sup>, 국내에서도

70)곽윤직 대표편집, 민법주해(X), 박영사, 1992, p. 559.

71) 위의 책, p. 559;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다1745 판결 등.

72) 위의 책, p. 564.

73) John F. Dobbyn, *Insurance Law*, Thomson West, Fourth Ed. 2003, St. Paul, MN, pp. 101-102.

양도가능설과 양도불능설이 제시되고 있다<sup>74)</sup>.

양도가능설(유효설)에 따르면 비록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에 대한 생명보험금 청구권의 양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도박계약이 아니라면 이를 굳이 무효로 볼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 견해는 주로 생명보험계약의 투자재(investment property)적 성격과 보험금청구권의 재산권성을 강조하고 있다<sup>75)</sup>. 이에 반해 양도불능설(무효설)은, 주로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의 강행규정성을 들어 피보험이익 없는 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양도는 금지하여야 한다는 점과 생명보험계약의 도박계약화의 우려 내지 피보험자 살해위험 등 도덕적 위험 발생의 우려를 들고 있다<sup>76)</sup>.

생각건대 생명보험계약에도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도입 내지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따를 경우,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에 대한 생명보험금청구권의 양도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국내에서 생명보험금청구권 양도를 무효라고 보는 견해도 이러한 견지에 입론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무효론이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생명보험계약의 도박화 내지 도덕적 위험 발생의 우려라는 것이 생명보험금청구권 양도를 일반적으로 금지할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 여부가 정확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sup>77)</sup>.

우리 법제상 법률규정에 의해 보험금청구권의 양도금지 또는 양도제한을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sup>78)</sup>. 이에 따라 민법이나 여러 특별법에서 채권의 양도금지 또는 양도제한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특별법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 등의 규정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2항, 고용보험법 제38조, 선원법 제152조 등의 공보험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위 규정들은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고용보험수급권, 선원의 실업수당·퇴직금·상병보상을 받을 권리 등의 양도와 압류

74) 김철호, 앞의 논문, pp. 264-266 참조.

75) *Mutual Life Ins. Co. of New York v. Allen*, 138 Mass. 24 (Mass. 1884), 102.

76) 김철호, 앞의 논문, pp. 265-266.

77) 오히려 생명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의 대부분이 피보험이익을 가장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배우자 사이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은 생명보험계약에의 피보험이익 도입론에 회의를 가지게 한다. UK Law Commission, Issues Paper 4, para. 4.14 이하 참조.

78) 박윤직 대표편집, 앞의 책, p. 570.

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법률이 이러한 채권의 양도 등을 금지하는 이유는,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보험보상 등을 받도록 강제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의 생활보장을 해 준다는 사익적 측면에 대한 고려도 존재하지만, 그 주된 목적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추구하는 사회보장 또는 경제정책 수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보험의 형식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의 산물이라고 볼 것이다. 우리 법제는 공보험의 목적인 국민의 경제적 복지증진 등의 공익달성을 위해 일정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내지 제한을 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주된 수단이라는 점에서 생명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 양도 등의 제한에 대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생명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에 직면한 유가족의 생계보장 목적이 강한 보험으로서, 이러한 생명보험계약의 특성은 보험금청구권 양도에 있어서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sup>79)</sup>. 그러나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금청구권도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가치이지만, 생전에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가 가지는 보험계약상 권리도 이에 못지않게 보호할 가치가 있다. 특히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거나 질병치료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허무는 행위이며, 궁극적으로는 “웃는 상속인”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정책적 고려뿐만 아니라 상법은 생명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양도를 금지 내지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및 생명보험계약에 피보험이익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생명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의 양도를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생명보험금청구권 양도를 일정한 경우에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 살해위험의 증가나 생명보험계약의 도박화 등의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운영에 있어서도 보험금청구권 양수자를 일정한 자격력을 갖춘,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받는 법인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79) 김철호, 앞의 논문, p. 265.

## IV. 영국의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 개혁론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생명보험계약에 피보험이익을 요구하는 영미권계 국가에서도 생명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이익의 기능과 관련한 회의론과 비판론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영국 및 영연방국가들 중 일부는 이미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거나 입법적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sup>80)</sup>. 우리나라에서 생명보험계약에도 피보험이익을 인정 또는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들은 대부분 영국법상 논의되고 있는 피보험이익의 본질과 기능을 참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개혁론은 우리의 입법론에도 중요한 좌표를 제공한다고 생각되므로, 이하에서는 영국의 피보험이익 개혁론을 소개하는 것으로 본고의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영국 법개정위원회는 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이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sup>81)</sup>.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영국 법개정위원회는 세 가지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sup>82)</sup>. 첫째, 영국법상 문제가 많다고 인식되고 있는 피보험이익이라는 개념을 생명보험계약에는 아예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 방법론은 이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채택된 바 있다<sup>83)</sup>. 둘째, 생명보험계약에 피보험이익을 인정하되, 피보험이익이 제기하는 법적 문제를 감안하여 피보험이익의 적용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명보험계약 체결에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증명할 것을 요구받지 않는 자연적 애착관계 또는 혈연적 애착관계(natural affection)를 기존 배우자 관계보다도 더 확장할 것과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을 엄격한 법률적·경제적 손해 대신 어떤 손해발생에 대한 합리적 예견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마지막 방안으로는 우리 법제와 같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체결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80) 김성문, 앞의 논문, pp. 553-555; 고택근, 앞의 논문, p. 521 이하 각 참조.

81) UK Law Commission, Issues Paper 4, PART 4 참조.

82) *Ibid.*, para. 4.26 이하.

83) 김성문, 앞의 논문, pp. 553-555.

영국 법개정위원회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피보험이익이라는 개념 내지 본질이 정의내리기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피보험이익이 없는 경우 생명보험계약과 여타 사행적 계약을 본질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보험의 도박화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여지가 농후하다는 점에서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피보험이익을 인정하되, 현행 영국법상 생명보험계약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혁차원에서 피보험이익의 인정 범위를 대폭 확충하고<sup>84)</sup>,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의 본질도 엄격한 법률적 개념인 금전손해의 발생 대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또는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될 합리적 예상 정도로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위 위원회는 피보험이익의 금전적 산정액도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위와 같은 합리적 예상과 동등한 정도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85)</sup>.

영국에서도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에 우리나라와 같이 피보험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가 있었으나, 생명보험계약에 동의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현행 영국법제와 충돌할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주의를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피보험자 보호 등 동의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감안할 때, 앞서 언급한 피보험이익의 확장 및 피보험이익의 개념 완화에 더해 동의주의를 일정한 범주의 생명보험계약에 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sup>86)</sup>.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은 법개정위원회를 통해 장기간 면밀하게 보험법 전반에 걸쳐 피보험이익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개혁논의를 이어 가고 있으며, 그 결실이 '2015년 영국보험법(Insurance Act 2015)'으로 탄생하였다. 위 법률이 직접적으로 생명보험계약과 피보험이익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진 않지만, 영국에서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 문

84) UK Law Commission, Issues Paper 4, para. 7.61 이하 참조.

85) *Ibid.*, para. 7.69-7.70.

86) *Ibid.*, para. 7.79.

제들은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한 듯하다.

영국 법개정위원회는 올해 3월경 「Reforming Insurance Contract Law Issues Paper 10 Insurable interest: updated proposals」을 통해 영국법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함께 입법론적 제안을 하고 있는데<sup>87)</sup>, 생명보험계약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입법론적 제안을 하고 있다.

- (i)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의 요건인 “금전적 이해관계(Pecuniary interest)”를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할 경우 부모-자녀관계와 같은 가족구성원 상호 간에 사실상 부양의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생명보험계약체결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보험이익의 요건인 금전적 이해관계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간에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발생의 “합리적 예상(Reasonable expectation)” 또는 “합리적 전망(Reasonable prospect)”이 있는 경우로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88)</sup>.
- (ii) 생명보험금액의 설정과 관련해서는, 생명보험금액의 상한을 채권액 등으로 제한하는 것과 같이 법률에 의한 인위적 제한보다는 보험계약 당사자들의 보험금납입능력과 같은 시장논리에 맡길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89)</sup>.
- (iii) 생명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자연적 애착관계(Natural affection)”가 있는 자의 범위를 현행법상 배우자 관계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관계 및 동거인(Cohabitants) 상호 간에도 보험계약 체결당시에 사실상 공동의 주거공간에 거주하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90)</sup>.
- (iv) 생명보험증권상 피보험자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을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1774년 생명보험법 제2조<sup>91)</sup>는 생

87) UK Law Commission, Reforming Insurance Contract Law Issues Paper 10. 영국 법개정위원회는 위 주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올해 6. 29.까지 받고 있다.

88) *Ibid.*, para. 3. 17.-3. 18.

89) *Ibid.*, para. 3. 24.-3. 25.

90) *Ibid.*, para. 3. 26.-3. 53.

91) [2] No policies on lives without inserting the persons names, &c.

And it shall not be lawful to make any policy or policies on the life or lives of any person or persons, or other event or events, without inserting in such policy or policies

명보험계약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서 폐지(Repeal)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92)</sup>.

- (v) 기타 피보험이익과 관련한 주요 실정법상 요건에 관해, ① 생명보험계약에 피보험이익이 결여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은 무효(Void)가 될 뿐 위법(Illegal)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sup>93)</sup>, ②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 체결당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손해발생 시에도 피보험이익이 존재할 필요는 없다고 제안하고 있다<sup>94)</sup>.

결론적으로, 영국의 생명보험계약과 관련한 피보험이익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첫째, 생명보험계약의 요건으로서 피보험이익을 요구하면서도 피보험이익에 관한 기존 법제 하의 엄격한 해석원칙을 완화하여 피보험이익의 존재범위를 확장하는 점과 둘째, 피보험이익에 관한 기존 법제의 과도한 규제와 제한을 보험계약 당사자의 자치와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으로 정책적 전환을 꾀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위와 같은 영국의 개혁론은 생명보험계약에 금전적으로 평가 가능한 피보험이익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당국의 고민의 산물이라고 본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피보험이익, 특히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의 본질과 기능,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본질적으로 우리 법제상 유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면밀한 분석이 결여된 상태에서 생명보험계약에도 피보험이익을 도입하자는 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필자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영국법상 피보험이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리 명확한 개념이 아니고, 그 운용상 효용도 과연 우리법제에 도입하여야 할 정도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회의를 가지게 한다. 특히 영

---

the person or persons name or names interested therein, or for whose use, benefit, or on whose account such policy is so made or underwrote.

92) UK Law Commission, Reforming Insurance Contract Law Issues Paper 10, para. 3. 60.

93) 피보험이익이 결여된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지만,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는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입법론적 제안이다.

94) UK Law Commission, Reforming Insurance Contract Law Issues Paper 10, para. 3. 61.-3.64.

국은 피보험이익에 관한 법적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이의 개혁론이 한창이고, 타 영연방국가들에서는 이미 개혁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또한 생명보험계약에 피보험이익을 도입하자는 국내 견해가 주장하는 주요 문제점들은 우리의 경우 상법 규정이나 공적보험제도 등에 의해 이미 어느 정도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법제상 생명보험계약에 피보험이익을 도입할 실익이 과연 어느 정도일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따라서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의 도입 이전에 우리 법제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법제상 여하한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입법정책의 운용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강위두 · 임재호, 상법강의(하), 전정판, 형설출판사, 2010.
- 고택근, “피보험이익의 개념확장, 상사법연구”, 제16권 제2호, 상사법학회, 1997.
- 곽윤직 대표편집, 민법주해(X), 박영사, 1992.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보험범죄 형사판례집, 금융감독원, 2014.
- 김선정,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49집, 1997.
- 김성문,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경영법률, 제16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6.
- 김성태, 보험법강의, 법문사, 2001.
- 김이수, “우리 법상 생명보험 매매의 필요성 및 양도방식의 적절성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김인제, “피보험이익의 개념에 관한 비판적 고찰”, 보험학회지, 제20권, 한국보험학회, 1982.
- 김철호,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연구”, 기업법연구, 제24권 제3호, 기업법학회.
- 박세민, 보험법, 제2판, 박영사, 2013.
-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4.
- 이용석, “피보험이익의 본질에 관한 비판적 검토”, 손해사정연구, 제2권 제2호, 한국손해사정학회, 2009. 8.
- 정찬형, “미국법상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보험법연구 3, 보험법연구회, 삼지원, 1999.
- 채이식, 상법강의(하), 개정판, 박영사, 2003.
- 편집대표 정동운 · 손주찬, 주식상법(VII), 제1판, 한국사법행정학회.

Andrew McGee, *Life Assurance Contracts*, Routledge · Cavendish, New York, 2006.

John F. Dobbyn, *Insurance Law*, Fourth Ed., Thomson West, St. Paul, MN, 2003.

Nicholas Legh-Johns · John Birds · David Owen ed, *MacGillivray on Insurance Law*, 10th Ed., Sweet and Maxwell, London, 2003.

R. Merkin, “Insurable interest, the repeal of the prohibition on gambling”, *Insurance Law Monthly*, December 2005.

UK Law Commission, Issues Paper 4(Insurable Interest), 2008.

UK Law Commission, Reforming Insurance Contract Law Issues Paper 10 Insurable interest: updated proposals, March 2015.

<http://lawcommission.justice.gov.uk/>

## Abstract

The Law Commission of England and Wales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hereunder, 'the Law Commission') are undertaking a joint review of insurance contract law. In 2014, the Law Commission published "Issues Paper 10 Insurable Interest: updated proposals", of which revisited the issue of insurance interest.

In the Paper, the Law Commission proposed several topics on life assurance. Firstly, a person should have an insurable interest in the life of another, irrespective of whether they can show economic loss. Secondly, an insured has an insurable interest where there is a reasonable prospect (or similar) that the insured will retain an economic benefit on the preservation of the life insured or incur an economic loss on death. Thirdly, there should be no statutory limit on the amount, which the insured may obtain insurance over the life insured. In sum, it can be said that the Law Commission proposed that the nature of certain relationship, which did not need evidences of economic losses, should extend beyond the self and spouse/civil partner categories, and certain limited extensions to the category of "natural affection", to cover parents insuring the lives of their children, and cohabitants insuring each other, subject to certain caveats.

Additionally, the Law Commission stressed that there is no clear rationale for limiting the value of policies; therefore, the value of the particular policy and the cost of the premium will vary depending on the risk appetite of the respective parties. In the meantime, it seems that some Korean school introduces insurable interest to life insurance without exhaustive criticism and analysis. In light of the current english law reform, the definition of insurable interest is not self evidently clear, and it is still skeptical whether there will be any advantages for the moderniz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Insurance Law with the induction of insurable interest to life insurance. Instead of bringing into the definition of insurable interest to life insurance, it is strongly recommended any legal problems on this issue should be revised and modified in due course.

※ **Key words:** Life Insurance, Insurable Interest, Contract of Indemnity, Moral Hazard, The Life Assurance Act 1774, Viatical Settlement